

**업무수행 중 캡탄, 치람 등의
발암성 추정물질에 노출되어
신장암이 발병한 것이거나
발병 촉진의 한 원인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4구합36649

[재판요지]

사망원인인 신장암은 망인의 업무수행 중 캡탄, 치람 등의 발암성 추정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 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 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

[주 문]

피고가 2004.11.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 강○○은 1987.6.1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7. 14 16:00경 선행사인 신장암, 중간선행사인 복막전이, 직접사인 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강○○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 2003. 4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 6. 27 강○○의 선행사인인 신장암은 강○○이 업무상 노출되었던 농약 사용과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04. 10. 25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15 위 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강○○이 ○○에 입사한 이후 15년 정도의 근무 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캡탄(Captan)과 치람(Thiram) 등의 발암물질 및 분진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였던 것이 원인이 되어 신장암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강○○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는 1970년대에 설립되어 무, 배추, 고추, 수박 등 각종 농산물의 종묘를 구입하여 선별한 후 코팅하여 종자를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업체로서 1997. 10월 외국인 소유 회사로 합병되었다.

▶ 강○○은 1987. 6. 1일 ○○에 입사한 후 1988까지는 종자정선업무를, 그 이후부터 1990. 9월까지는 강원도지점 영업업무를, 그 이후부터 1994. 10월까지는 포장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혼자 종자코팅업무를 담당하다가 1999년경부터 사망 시까지는 정선팀(정선, 코팅, 가공)장으로 근무하였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평일에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에 08:30부터 13:00까지이며, 2001. 1월부터는 격주로 휴무하였다. 1997. 10월 회사 합병 이전에는 계절적으로 임업이 많았는데 5, 6, 7월과 11, 12월에 업무가 많아 늦게는 24:00까지 일하기도 하였고, 주말에도 근무하였다.

▶ 강○○이 1994. 10월경부터 담당하였던 종자코팅작업은 농사에 쓰이는 각종 씨앗 등이 썩지 않도록 씨앗을 코팅기계에 일정 비율 투입하고 캡탄, 치람, SOR, SOW 등의 살균제 및 광택제 등을 섞은 물을 기계에 혼합하는 것이다. 1997. 10월 회사 합병 이전에는 종자처리에 캡탄을 사용하였으나, 발암성이 있다는 외국의 보고에 따라 그 이후에는 치람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1997년 경 이후 외국에서는 캡탄의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999. 4월 자동기계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종자코팅작업 시 수동기계로 농약을 살포하였는데, 농약을 물에 타는 과정에서 농약가루가 좀 날리며 농약냄새가 심하지만 일단 물에 희석해 놓으면 그리 심하지 않고, 분말이 날리지도 않는다. 수동기계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바가지로 펴서 살포하지만 자동기계는 알아서 뿌려준다. 종자 1kg에 투입되는 농약의 양은 2g정도이고, 농약의 1일 투입량은 보통 때는 500 ~ 1,000g정도이고, 많은 때는 4,000g 정도이다. 1999. 4월 이후 자동기계로 대체되었으나 오이, 호박 등의 품종은 자동기계로 코팅을 할 수 없어 여전히 수동기계로 작업을 하고 있다.

▶ 종자 표면의 털을 제거하고 고르게 하는데 제무기가 사용되었는데, 제무기를 회전시킬 때 많은 분진이 발생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집진장치가 없어 정선실에 분진이 매우 심하였는데, 강○○은 정선실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특히 분진에 많

이 노출되었다. 1997. 10월 회사 합병 이후 집진장치를 설치하여 현재는 분진이 많지 않은 편이다.

다. 판 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강○○은 1987. 6. 1 ○○에 입사한 이후 매년 실시한 정기건강검진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의료보험 수진내역상 전문적으로 치료받은 질병도 없었으며, 가족 중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도 없었으나, 2002. 4. 22 서울○○병원 진단결과 신장암 진단을 받은 후 2개 월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캡탄과 치람을 사용하였는데, 강○○은 위 회사 근무 시 1994. 10월경부터 사망일까지 약 8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캡탄, 치람 등 발암성 추정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종자코팅작업을 담당하였던 점, ○○에 1980년대에는 집진장치가 없어 정선실에 분진이 매우 심하였는데, 강○○은 혼자 정선실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특히 많은 분진에 노출되었던 점, 근무조건, 보호장비 착용 등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기타 환기시설 등의 작업환경 여부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달라질 것인바, 만일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작업환경이 몹시 나빴다면 강○○의 근무여건이 암 발생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의 신장암은 위와 같이 업무수행 중 캡탄, 치람 등의 발암성 추정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